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24회 제1차 임시회(2018. 9. 13.)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조희옥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가. 제출일자 : 2018년 8월 23일 (목)
- 나. 제출자 : 마포구청장

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

- 2018년 8월 27일 (월)

4. 관련근거

- 「지방세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제정이유

지방세 납세자의 권리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5291호, 2017.12.26. 공포, 2018.1.1.시행)됨에 따라,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,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6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· 용어 정의, 법령 등과의 관계 (안 제1조부터 제3조)
- 나. 납세자보호관의 배치, 선발기준, 업무, 권한 (안 제4조부터 제7조)
- 다. 납세자보호업무의 심의 (안 제8조에서 제9조)
- 라. 고충민원의 대상, 신청 및 처리 기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부터 제19조)
- 마. 세무조사기간 연장·연기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부터 제23조)
- 바. 권리보호요청 처리원칙, 대상,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4조부터 제28조)
- 사. 납세자권리현장 제·개정에 관한 사항(안 제29조부터 제30조)
- 아.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1조부터 제33조)

7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 : 2018. 7. 26. ~ 8. 15. (20일간)
 - 2)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- 3)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8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와 업무처리 방법 및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조례안의 구성은

안 제1조부터 안 제33조까지 총33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

- 가.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배치, 선발기준, 업무,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나. 안 제8조부터 제32조까지는 납세자의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본 제정안은

-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,
- 안 제6조의 납세보호관 업무 중 고충민원 처리 등은 현재 세무분야의 전문인력인 세무담당 직원이 처리하고 있고, 또한 업무처리를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며,
- 안 제5조의 선발기준에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추가 선발하는 것은 추후에 인력수급 문제와 인건비 비용추계에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해당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관 계 법령

「지방세기본법」

제77조(납세자 권리보호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26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,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26.>

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·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12.26.>

제89조(청구대상)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·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1.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(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. 다만,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2.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
3. 「감사원법」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
4.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
5.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

제108조(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
 2.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·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제121조(통고처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(確證)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"벌금상당액"이라 한다)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, 추징금,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·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(이하 "납부신청"이라 한다)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.

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7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
2.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
3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
4.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
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,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51조의2(납세자보호관의 업무·권한·자격 등)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,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
2. 세무조사·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
3.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
4.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법·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
 2. 위법·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
 3. 위법·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
 4.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·법률·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,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7.12.29.]